배 포 용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방향 설명서

2021. 12.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목 차

Ⅰ. 의의 ····· 1

Ⅱ. 주주 ····· 2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 2

〔핵심원칙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 4

Ⅲ. 이사회 ····· 6

〔핵심원칙 3〕 이사회 기능 ····· 6

〔핵심원칙 4〕 이사회 구성 ····· 9

〔핵심원칙 5〕 사외이사의 책임 ····· 11

〔핵심원칙 6〕 이사 활동의 평가 및 보상 ····· 13

〔핵심원칙 7〕 이사회 운영 ····· 15

〔핵심원칙 8〕 이사회 내 위원회 ····· 16

Ⅳ. 감사기구 ····· 18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 18

〔핵심원칙 10〕 외부감사인 ····· 19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방향 설명서

Ⅰ. 의의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은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고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수탁자책임 활동 가이드라인」,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 기금의 장기수익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탁자책임 활동을 수행합니다. 기금은 책임투자 및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기준, 방법, 절차에 따라 주주로서 회사와 소통하고 주주권행사 방향을 결정합니다.

기금은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등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기금이 현재 책임투자 및 주주권행사 등에 적용하고 있는 수탁자책임 활동 관련 지침, 가이드라인 등의 주요사항을 반영한「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방향 설명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의결권행사 등 기금의 주요 책임투자 활동 방향에 대한 정보를 투자대상 기업들과 공유하여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기금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환경과 여건은 상이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 각 회사는 본 설명서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금은 각 회사가 본 설명서를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설계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기금 역시 투자기업의 기업지배구조가 발전될 수 있도록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대화를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기업지배구조의 환경 변화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본 설명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Ⅱ. 주주

기금은 주주가 회사의 소유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며, 회사가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는지를 살핍니다.

기금은 회사가 주주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주주에게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은 주주의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회사가 적절하고 신속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합니다.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원칙 1-①) 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주주총회 소집공고)** 회사는 모든 주주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주총회 부의안건 및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충실한 안건 공시)** 주주총회 부의안건의 공시는 주주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별도의 조사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수준으로 제공하여 충실성을 제고합니다.

▶ **(정보공개)** 회사는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 이외에도 영업·생산활동 또는 기업경영활동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가 또는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합니다.

(세부원칙 1-②) 회사는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회사는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정기주주총회를 집중일 이외의 날에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 회사는 모든 주주에게 평등하게 부여된 권리가 적극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 도입 등 주주가 다양한 방법으로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 **(주주총회 결과 공개)** 회사는 주주의 참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의 안건별 찬반비율, 구체적 표결결과 등 내역을 주주총회 결과 공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세부원칙 1-③) 회사는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 **(주주제안 절차 안내)** 회사는 주주제안 절차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주주제안 내용 설명)** 회사는 주주가 제안한 의안에 대하여 주주총회 등에서 해당 주주가 자유롭게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다른 주주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도록 합니다.

▶ **(공개서한 내용 설명)** 회사는 기관투자자 등이 수탁자책임 활동의 일환으로 제출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이에 대한 처리 현황을 공개하여 모든 주주가 회사의 현안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부원칙 1-④)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회사는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이를 주주에게 안내한다.

▶ **(합리적 주주환원정책 수립)** 회사는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그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회사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합니다.

▶ **(주주환원정책 설명)** 회사는 주주 등과의 대화를 통해 회사의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된 회사의 입장과 전망, 근거들을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 및 반영하도록 노력합니다.

(핵심원칙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회사는 주주에게 회사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한다.**

(세부원칙 2-①) 회사는 소수주주가 지배주주에 비하여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자본구조 변경, 분할·합병, 주식분할·병합 등에 있어서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평등한 대우)** 회사는 회사가 발행한 다른 종류의 주식들 중 같은 종류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를 서로 평등하게 대우합니다.

▶ **(소수주주 보호)** 회사는 소수주주들이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권한 남용 가능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 **(자본구조 변경)** 회사는 증권의 전환, 신주인수권 부여, 종류주식 발행 등 자본구조를 변경하는 안을 마련할 경우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합니다.

▶ **(분할·합병 등)** 회사는 회사의 분할, 합병, 분할합병, 영업양수도,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기업분할 및 주식교환 등을 결정할 때 주주가치의 훼손이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주주들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주식분할·병합)** 회사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시 경영상 필요를 고려하여 검토하되, 발행주식수가 비례적으로 증가(감소)하도록 합니다.

(세부원칙 2-②) 회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자기거래 및 내부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한다.

▶ **(내부거래 등 검토)** 회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 또는 계열 회사와의 자기거래 및 내부거래로 인하여 부당하게 손실을 입지 않도록 관리 장치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이사회는 관리 장치가 적절히 작동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도록 합니다.

▶ **(내부거래 등의 공시)** 회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 또는 계열 회사와의 자기거래 및 내부거래가 부당한지 여부를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거래 등의 내용 및 이사회의 검토 내용을 충분히 공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Ⅲ. 이사회

기금은 회사의 이사회가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회사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회사 및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주요 경영의사결정 및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은 이사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에 충분하고 효과적인 논의 및 객관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이사의 전문성, 독립성,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기금은 이사회가 회사의 장기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경영진과 주주의 이해관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평가 및 보상체계를 설계하여 공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고 보상할 것을 기대합니다.

(핵심원칙 3) 이사회 기능

- **이사회는 회사와 주주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3-①)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경영의사결정 및 경영감독)** 이사회는 회사의 사명, 목적, 전략, 주요 자본지출, 인수합병을 포함한 재무계획 등을 검토·승인하고,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합니다.

▶ **(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신의성실에 의하여 회사의 장기적인 존속과 성장을 위하여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행동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 주주 이익의 장기적인 증진

- 회사 근로자의 이익

- 채권자, 공급자, 소비자와의 공정한 사업관계 증진 필요성

- 주주 간의 공정성

- 회사 운영이 지역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주주평등 원칙)** 이사회는 주주 간 이해가 상충되는 사안에 대하여 주주평등 원칙에 입각하여 결정합니다.

▶ **(기업문화 및 윤리)** 이사회는 높은 수준의 경영 윤리를 정립하며, 회사의 문화로 정착하기 위해 행위규범(code of conduct)의 마련 및 실행을 감독합니다.

▶ **(이사회에 대한 지원)** 이사회는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충분하고 정기적인 교육 및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필요시 회사의 비용으로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 **(소통)** 이사회는 주주와 경영진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중재자로서 적절한 수준의 경영상황을 시의적절하게 공개하고, 주주의 입장을 청취하여 합리적인 의견일 경우 이를 회사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중점관리사안)** 이사회(특히 사외이사)는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주주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의 사항과 관련하여, 주주 등 이해관계자와 대화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와 대화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회사의 배당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에 관한 사항

- 법령상의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 주주총회 안건 중 주주가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 책임투자 요소인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회사의 변동에 관한 사항

▶ **(예상하지 못한 우려의 발생)** 이사회는 경영활동 수행 중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과 관련하여 예상하지 못한 회사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실관계 및 회사 측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수립하여 그 진행상황을 주주에게 성실히 알립니다.

(세부원칙 3-②)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이사회는 최고경영자의 유고 등 비상시 혹은 최고경영자의 퇴임시 최고경영자 승계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을 마련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운영)**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세부원칙 3-③) 이사회는 내부통제정책(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감독)** 이사회는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회사의 회계 및 보고 시스템, 내부통제체계, 리스크 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회사의 재무적·비재무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감독합니다.

▶ **(준법지원)** 회사는 법령에 따라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거나 준법지원 조직을 설치하여 이사회 및 경영진의 적법한 업무수행을 지원합니다.

▶ **(공시정보관리)** 회사는 공시정보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임직원들에게 주기적으로 교육하여 주식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고 주주 간 정보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핵심원칙 4) 이사회 구성

-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4-①)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도록 한다.

▶ **(이사회 규모)**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한 규모가 되도록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적절한 규모를 지속적으로 검토합니다.

▶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 이사회는 관련 법령상 비율 이상으로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지를 공시하는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합니다.

▶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분리)**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로 하며, 대표이사 직책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직책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선임 사외이사 도입 등 이사회 독립성을 제고하도록 합니다.

(세부원칙 4-②) 이사회는 회사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 **(이사의 전문성)** 이사회는 회사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에서의 이해도가 높고, 재무, 회계, 글로벌 시장 등에서의 경험과 전문 지식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도록 합니다.

▶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이사회는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개별 이사의 다양한 지식·경험·능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구성하고, 법령상 성별 다양성 준수를 위하여 노력합니다.

▶ **(이사의 책임성)** 이사회는 이사로서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사회 준비 및 참석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구성되도록 합니다.

-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자
- 이사회 참석률이 직전 임기동안 75% 미만이었던 자
-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로서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당해회사 또는 계열회사 재직시 명백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자

(세부원칙 4-③)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사회는 이사후보를 공정하게 추천하기 위해 이사후보의 자격요건, 이사후보 추천 절차를 마련하여 공개합니다. 이를 위해 과반수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이사회는 이사후보 상정 및 (재)선임 과정에서 각 후보의 추천사유, 독립성, 이사회 참석률 등 이사선임 안건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 및 시간을 제공합니다.

▶ **(주주의 이사후보 제안)** 이사회는 법령상 요건 등을 만족하는 주주들의 이사후보 제안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부하지 않으며, 해당 후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그 내용을 공개합니다.

(세부원칙 4-④)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한다.

▶ **(관련 정책의 수립)** 이사회는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의 임원(업무집행지시자 등 경영진 포함)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 **(점검 및 현황 설명)** 이사회는 과거 횡령, 배임, 사익편취, 부당지원행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나 현재 횡령, 배임, 사익편취, 부당지원행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가 있는 자가 임원(업무집행지시자 등 경영진 포함)으로 선임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현황을 설명합니다.

(핵심원칙 5) 사외이사의 책임

-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회사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원칙 5-①)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회사는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사외이사의 독립성)**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선임되도록 합니다.

- 당해회사 또는 계열회사(비영리법인 포함)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

- 중요한 지분·거래·경쟁관계 등에 있는 회사(비영리법인 포함)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

-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자

- 그 밖에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에 우려가 있는 자

▶ **(사외이사의 독립성 유지)** 사외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보수를 수령하는 것 이외에 회사와 별도의 자문계약,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세부원칙 5-②)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사외이사의 충실성)** 사외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도록 합니다.

▶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 회사는 비영리법인 등을 포함하여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을 성실히 공시하고,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 기준을 마련합니다.

(세부원칙 5-③) 회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사외이사에 대한 업무지원)** 회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 정보 및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제공

하도록 하고, 사외이사의 정보제공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부서를 지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이사회 등 관련 자료제공)** 회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안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공합니다.

▶ **(사외이사 회의)** 회사는 사외이사만이 참석하는 회의개최 등 독립적인 환경에서 사외이사 간 회사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핵심원칙 6) 이사 활동의 평가 및 보상

- **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도록 한다.**

(세부원칙 6-①) 이사에 대한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평가결과는 이사의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도록 한다.

▶ **(이사에 대한 평가)** 회사는 이사회, 이사, 이사회 내 위원회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합니다.

▶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회사는 사외이사를 평가할 경우 자기평가, 사외이사 상호평가, 외부평가 등을 활용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 **(평가결과의 반영)** 회사는 이사에 대한 재선임 결정시 이사에 대한 평가결과를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합니다.

(세부원칙 6-②) 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 **(평가결과의 반영)** 이사(업무집행지시자 등 경영진 포함)의 보수 산정 및 재선임 결정 등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이사의 보상정책)** 이사에 대한 보수는 회사 및 주주의 장기가치 창출과 연계되도록 하며, 이사회는 이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보수에 연계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이를 공개합니다.

▶ **(보상위원회)** 이사회는 보상과 관련된 회사의 정책을 수립하고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의 소지가 차단된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보상(보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독립적인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보수한도 및 지급)** 이사회는 사내이사의 보수한도 제안시 경영성과 등에 연계하고, 주주가 이사보수의 실지급액을 고려하여 보수한도에 대한 실질적 승인이 가능하도록 그 내용을 주주총회 소집공고시에 공개합니다.

▶ **(주식연계보상)** 이사회는 경영성과 제고를 목적으로 다음 조건을 고려하여 이사 및 임직원에게 주식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등 주식과 연계된 형태의 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시장요인 고려 및 특정 경영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부여함

- 연간 주식연계보상 물량이 총 발행주식수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획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함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에 대한 사후조정은 증자 및 소각에 따른 기존 주주가치 유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함

▶ **(퇴직금·퇴직위로금)** 이사회는 지급 주체, 대상, 지급수준, 지급의 근거 등을 규정한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을 마련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이 때 황금낙하산 계약과 같이 주주의 이익을 희생하고 경영진과 이사회를 보호하는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합니다.

▶ **(부당한 보수의 반환)** 이사회는 이사(업무집행지시자 등 경영진 포함)의 재임기간 중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으로 성과를 인위적으로 높인 사실이 사후에 밝혀질 경우 부당하게 받은 보상을 반환하도록 합니다.

▶ **(정보공개)** 이사회는 이사 및 경영진의 보상에 대한 회사의 정책 및 주요 고려사항, 보상의 형태 및 조건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핵심원칙 7) 이사회 운영

- **이사회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세부원칙 7-①)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도록 한다.

▶ **(이사회 운영규정)** 원활한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세부원칙 7-②)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한다.

▶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는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주주의 열람 청구시 부당하게 이를 거절하지 않도록 합니다.

▶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회사는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내역, 안건 찬성률, 주요 토의내용과 결의사항을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충실히 공시하도록 합니다.

(핵심원칙 8) 이사회 내 위원회

-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

(세부원칙 8-①)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는 3분의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 **(이사회 내 위원회)** 이사회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활성화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사내외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회 본연의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가 각 업무를 독립적이고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공개합니다.

(세부원칙 8-②)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도록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규정)**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각각의 위원회 별로 설치목적, 권한과 책임, 활동 및 성과평가, 구성 및 자격 등을 명문으로 규정하도록 합니다.

▶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 보고)** 이사회 내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하도록 합니다.

▶ **(개별 위원의 활동내역)** 회사는 개별 이사회 내 위원의 위원회 출석내역, 안건 찬성률, 주요 토의내용과 결의사항을 개별 위원별로 기록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충실히 공시하도록 합니다.

▶ **(업무지원)** 회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 정보 및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고, 각 위원들의 정보제공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Ⅳ. 감사기구

기금은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가 독립적인 입장에서 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의 적절한 운영을 감독하고, 재무·회계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기대합니다.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9-①)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 **(내부감사기구)** 회사는 이사 및 경영진이 업무를 적법하고 타당하게 처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감시·감독 및 정확한 재무현황 보고를 위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둡니다.

▶ **(감사위원회 구성)** 회사가 감사위원회를 둘 경우 독립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감사위원회는 3분의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그중 1인 이상은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성(재무·회계 등)을 보유한 자가 되도록 합니다.

▶ **(감사위원 또는 감사의 보수)** 회사는 감사위원 또는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다만, 경영진의 경영성과에 연동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합니다.

▶ **(업무지원)** 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 정보 및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고, 감사위원 또는 감사의 정보제공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전담부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둘 경우 전담부서는 충분한 수의 전문인력으로 구성하고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추도록 노력합니다.

(세부원칙 9-②)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 **(내부감사기구 활동 보고)**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등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하도록 합니다.

▶ **(개별 감사위원의 활동내역)** 회사는 개별 감사위원의 감사위원회 출석내역, 안건 찬성률, 주요 토의내용과 결의사항을 개별 감사위원별로 기록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충실히 공시하도록 합니다.

(핵심원칙 10) 외부감사인

- **회사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회사와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원칙 10-①)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 **(외부감사인)**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회사의 회계 및 감사 전반에 대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사를 위해 외부감사인을 선임합니다.

▶ **(비감사용역)**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비감사용역 보수를 비롯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할만한 용역 및 비용을 제공하지 않도록 감시·감독합니다.

(세부원칙 10-②)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 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 하여야 한다.

▶ **(외부감사 업무 협조)**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전에, 연결기준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4주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의 직무수행을 관리합니다.

▶ **(외부감사인과의 의사소통)**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외부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확인되는 회사의 각종 위험을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합니다.

▶ **(외부감사인 평가·보수)**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외부감사인이 적정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감사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는지 평가하고 충분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수를 결정합니다.